

제1561호

2020. 12. 28.

발행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편집인 : 정 책 홍 보 실 장 이 기 호
전 화 : 0 2 - 3 4 2 3 - 5 0 8 5

구 보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2454호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정정) 3

제1562호

2020. 12. 31.

발행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편집인 : 정 책 홍 보 실 장 이 기 호
전 화 : 0 2 - 3 4 2 3 - 5 0 8 5

구 보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60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6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규 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92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93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6

입 법 예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246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2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승인 및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20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자진반납) 공고	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206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103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245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105
--------------------------	----------------------------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본 구보의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행정정보→행정알림→구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 의뢰 및 편집문의 ☎ 02-3423-5085 / 모사전송 02-3423-8820

◎ 구보발간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간)이며, 발간일 3일전(화요일)까지 게재의뢰

D-3일 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최종편집 → D일 발간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강 남 구

공 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2454호****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정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2383호(2020.12.16.)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삼성1동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공고하였으나, 변경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공람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1. 공람기간**

- 정정 전 : 2020. 12. 16. ~ 2020. 12. 30.
- 정정 후 : 2020. 12. 16. ~ 2021. 01. 11.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3423-6074), 삼성1동주민센터 (☎3423-7820)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45-8785)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명칭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 다. 구역면적 : 25,655.80㎡
- 라. 시행자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서우석)

※ 조합주소 : 강남구 학동로 101길 7, 203호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60개월(예정)

바. 사업시행인가일 : 2017.08.18.

사. 건축계획

구 분	변경 전 (‘17.08.18. 사업시행인가)	금회 변경(안)	비 고
건축면적	3,328.14㎡	3,883.91㎡	
연 면 적	92,204.51㎡	109,172.94㎡	
건 폐 율	15.01%	17.51%	
용 적 륜	249.99%	249.98%	
동수 및 층수	4개동, 지하3층~지상25층	4개동, 지하4층~지상25층	
세대수	419세대	419세대	
주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장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의”로, “고등학생”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으로, “자녀를 대상으로”를 “자격을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장학생정원)”을 “(장학생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간 통장정수”를 “통장정원”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의 ----- 고등학생, 대학생-----</u> ----- -----.
제2조(장학생의 신청대상 등) ① <u>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u>	제2조(장학생의 신청대상 등) ①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u> ----- <u>자격을 갖추어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는 통장의 자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4조(장학생정원) 장학생은 동장이 연 간 통장정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때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정원) ----- 통 장정원----- -----. ----- -----.
제5조(장학금)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 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의 공납금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 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 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 ----- 장학금----- -----.
〈신 설〉	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 의 경우,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 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종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제1조 및 제2조)

나. 장학금 지급액을 종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 공납금에서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의 정액으로 개정(제5조)

다. 타 장학금 및 학비보조를 받는 통장자녀에게도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급 가능(제2조 및 제5조)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4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전단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녀가 학생”을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5만원, 대학생 9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를 말한다. 〈조 신설 2016.04.08.〉	제1조의2(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 ----- -----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5만원, 대학생 9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u>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제1조의2제2호, 제7조)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5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1년 12월 31일-----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5조의2)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 “기금운용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통합계정예의 예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⑤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강남구 의회의원, 기금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관계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을 규정함(제3조)
-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제4조)
- 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제6조)
-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바.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제11조)
- 사.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아목8)”을 “가목2)”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문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안 별표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무료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무료	
3) 건축물관리대장	1장초과마다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건	무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무료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필지	무료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주택	무료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무료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1건	무료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 등본(갑,을부)		무료	
- 초본(갑부)	1건	무료	
11) 농지원부	1건	무료	
12) 가족관계등록부	1건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 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1건	무료	
- 제적등본		무료	
- 제적초본	1건	무료	
13)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 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의 경우 별표 제1호 <u>아목8</u>)의 세목 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00분의 5 0으로 경감한다.	③ ----- ----- ----- <u>가목2</u>)----- ----- ---
〈 <u>신 설</u> 〉	④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8조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u>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 원문서를 포함한다)</u> 를 발급하는 경 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2종)			
(단위/원)				(단위/원)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류	단위	수수료액	비고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200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무료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무료	
3) 건축물관리대장	1장초과마다	100		3) 건축물관리대장	1장초과마다	무료	
	1건	400			1건	무료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8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무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무료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무료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		8)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무료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300		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1건	무료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 신청				10)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 신청			
- 등본(갑,을부)	1건	500		- 등본(갑,을부)	1건	무료	
- 초본(갑부)	1건	500		- 초본(갑부)	1건	무료	
11) 농지원부	1건	800		11) 농지원부	1건	무료	
12) 가족관계등록부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 관계증명서, 폐쇄혼인 관계증명서, 폐쇄입양 관계증명서, 폐쇄기본 증명서)	1건	500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 관계증명서, 폐쇄혼인 관계증명서, 폐쇄입양 관계증명서, 폐쇄기본 증명서)	1건	무료	
- 제적등본	1건	500		- 제적등본	1건	무료	
- 제적초본	1건	300		- 제적초본	1건	무료	
13) 성적증명서		무료		13) 성적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4) 졸업증명서		무료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200		1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무료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200		16)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무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위드 코로나시대 대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 감면함으로써, 민원창구의 대면발급 신청을 무인민원발급기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아울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수수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제6조제 4항 신설 및 별표 제1호아목 개정)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8호**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을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나에서 선정하고 선정을 위해”를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레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차레만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① (생 략)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 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선정하고 선정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경 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 조 -----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 정에 -----.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삭 제〉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 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점수 에 미달할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 게 할 수 있다.	③ ----- 차례만 재계약-----, 〈후단 삭 제〉 ----- ---. 다만, 재계약 ----- -----. -----.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구 전체 위 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 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 ·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	④ ----- ----- ----- ----- -----. ----- -----

현행	개정안
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1. ~ 10. (생략) 11. 삭제 1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시설 ⑤ (생략)	----- ----- ----- -----. 1. ~ 10. (현행과 같음) 1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시설 ⑤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제9조제2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의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규정 삭제(제9조제3항)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599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정비”를 “정비 및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5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 6. (생략) ②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 -----. 1. ----- 정비 및 안전점검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5년 12월 31일-----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금의 용도에 안전점검을 추가하여 해당 기금의 운영취지에 맞게 활용 목적을 구체화하며,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년간에 걸친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추가(제3조)

- 기존 기금의 활용 목적 중 ‘광고물 등의 정비’에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안전점검’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활용 목적을 구체화 함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5조)

- 현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함으로써 기금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60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를 받지 않고”를 “장애 없이”로, “위하여”를 “할 수 있도록”으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청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로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 ----- ----- ----- -----.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 단계별 사업계획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 내용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	

현행	개정안
<u>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u> <u>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 <u>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도로계획, 교통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적 참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 ----- 장애 없이 ----- ----- 할 수 있도록 -----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청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8.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9조(신설도로의 보도 의무화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는 도시관리계획 또는 주변의 지장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u>위원회의 심의를 받아</u>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신설도로의 보도 의무화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u>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학부모, 노인,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기타 구청장이 보행환경과 관련	<u>〈삭제〉</u>

현행	개정안
<u>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u>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u> <u>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u> <u>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u> <u>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u> <u>할 수 있다.</u> <u>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u>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u> <u>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u> <u>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u> <u>② 이해관계인은 심의·의결의 공정</u> <u>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u> <u>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u> <u>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u> <u>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u> <u>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u> <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u> <u>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u> <u>다.</u> <u>제1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u> <u>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u> <u>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u>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제1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실비변상)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상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강남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삭제(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나.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8조)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601호**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수수료, 진료비의 면제) ②다음 각V호의 어느V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제3조(수수료, 진료비의 면제) ②----- ----- ----- -----. 1. ~ 8.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 담금
9. ~ 11. (생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 까지와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추가

규 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929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강남구 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동	
총 계		1,723	1,032	169	491	31
정무직 계		1	1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713	1,027	169	491	26
2급 소계		1	1	0	0	0
부구청장		1	1			
4급 소계		8	6	1	0	1
행정		5	4			1
행정 또는 기술		2	2			
기술		1		1		
5급 소계		72	38	11	22	1
행정		42	23		18	1
행정·시설(토목) 또는 시설(건축)		1	1			
행정·방재안전·시설(토목) 또는 시설(건축)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환경 또는 보건		1	1			
행정 또는 시설(건축)		2	2			
시설(토목)		2	2			
시설(건축)		1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9	5		4	
행정 또는 시설(지적)		1	1			
행정 또는 보건		2		2		
보건·간호·의무 또는 행정		1		1		
보건·간호 또는 의무		1		1		
행정·의무·약무 또는 보건		1		1		
의무(임기제)		6		6		
6급 소계		340	231	28	76	5
행정		184	118	6	56	4
행정 또는 별정		1				1
행정 또는 방재안전		1	1			
행정·시설(토목)·시설(건축) 또는 시설(도시계획)		2	2			
행정·환경·보건 또는 공업(화공)		6	6			

직급별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동	
행정 또는 녹지		3	3			
행정·농업(농업) 또는 농업(축산)		1	1			
시설(토목)		11	11			
시설(토목) 또는 시설(건축)		1	1			
시설(건축)		6	6			
시설(지적)		6	6			
공업(전기)		4	4			
공업(기계)		1	1			
행정 또는 공업(기계)		2	2			
행정·녹지 또는 시설(건축)		4	4			
행정 또는 시설(건축)		6	6			
행정 또는 시설(토목)		2	2			
행정·공업(화공) 또는 공업(기계)		1	1			
세무		20	20			
행정 또는 세무		10	10			
행정 또는 보건·간호		15		15		
보건·의료기술·간호 또는 행정		1		1		
약무·행정·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농업(축산) 또는 수의		1	1			
의료기술		2		2		
사회복지		28	11		17	
행정·방송통신 또는 전산		4	4			
보건진료(임기제)		3		3		
운전		7	4		3	
시설관리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2	2			
7급 소계		512	362	45	95	10
행정		260	192	7	55	6
공업(기계) 또는 공업(전기)		7	7			
농업		1	1			
녹지		9	9			
시설(토목) 또는 시설(건축)		8	8			
시설(지적)		8	8			
공업(전기)		4	4			

직급별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동	
환경		3	3			
녹지 또는 시설(건축)		1	1			
시설(토목)		16	16			
공업(화공)		3	3			
세무		45	45			
시설(건축)		13	13			
사회복지		57	27		30	
전산		3	3			
행정, 전산 또는 방송통신		7	7			
행정·시설(토목)·시설(건축) 또는 시설(도시계획)		2	2			
보건		8		8		
식품위생		1		1		
보건 또는 수의		1	1			
약무		4		4		
간호		16		16		
의료기술		5		5		
행정 또는 전산		2	2			
시설(토목) 또는 시설(교통시설)		1	1			
숙기		1				1
운전		12	2	2	7	1
시설관리		7	3	2	2	
전기운영		1	0			1
사무운영		6	4		1	1
8급 소계		434	215	73	138	8
행정		211	111	6	91	3
녹지		3	3			
시설(토목) 또는 시설(건축)		19	19			
시설(지적)		4	4			
녹지 또는 시설(건축)		2	2			
시설(토목)		6	6			
공업(기계) 또는 공업(화공)		1	1			
시설(토목) 또는 공업(기계)		1	1			
공업(기계) 또는 공업(전기)		1	1			
행정·시설(토목)·시설(건축) 또는 시설(도시계획)		1	1			
환경		2	2			
공업(화공)		1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동	
세무		28	28			
시설(건축)		2	2			
공업(기계)		2	2			
행정 또는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		51	10		41	
전산		3	2	1		
행정 또는 시설(건축)		2	2			
보건		3		3		
간호		53		53		
의료기술		7		7		
행정 또는 농업, 녹지		1	1			
시설(토목) 또는 시설(교통시설)		1	1			
행정 또는 보건, 식품위생		1		1		
숙기		2				2
운전		19	11	2	5	1
전기운영		2	1			1
사무운영		3	1		1	1
9급 소계		346	174	11	160	1
행정		140	92	2	45	1
공업(기계) 또는 공업(전기)		5	5			
녹지		2	2			
시설(토목) 또는 시설(건축)		15	15			
시설(지적)		3	3			
전산 또는 방송통신		2	2			
공업(화공)		1	1			
행정 또는 세무		37	37			
행정 또는 사회복지		114	6		108	
보건		2		2		
의료기술		5		5		
행정 또는 전산		1	1			
운전		17	8	2	7	
전기운영		2	2			
전문경력관 계		1	1	0	0	0
나군 소계		1	1	0	0	0
화생방		1	1			
별정직 계		8	3	0	0	5

직급별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동	
5급상당 소계		3	1	0	0	2
비서실장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3	1	0	0	2
일반비서		1	1			
전문위원		2				2
7급상당 소계		2	1	0	0	1
일반비서		2	1			1

신·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강남구 직렬별 정원(규칙 제2조 관련)						강남구 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직급별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동					구본청	보건소	동	
총 계		1,723	1,032	169	491	31	총 계		1,723	1,032	169	491	31
(생 략)						(생 략)							
6급 소계		338	230	28	75	5	6급 소계		340 (+2)	231 (+1)	28	76 (+1)	5
(생 략)						(생 략)							
행정 또는 세무		9	9				행정 또는 세무		10 (+1)	10 (+1)			
(생 략)						(생 략)							
사회복지		27	11		16		사회복지		28 (+1)	11		17 (+1)	
(생 략)						(생 략)							
7급 소계		512	366	45	91	10	7급 소계		512	362 (△4)	45	95 (+4)	10
(생 략)						(생 략)							
세무		44	44				세무		45 (+1)	45 (+1)			
(생 략)						(생 략)							
사회복지		53	27		26		사회복지		57 (+4)	27		30 (+4)	
(생 략)						(생 략)							
운전		16	6	2	7	1	운전		12 (△4)	2 (△4)	2	7	1
(생 략)						(생 략)							
시설관리		8	4	2	2		시설관리		7 (△1)	3 (△1)	2	2	
(생 략)						(생 략)							
8급 소계		424	212	73	131	8	8급 소계		434 (+10)	215 (+3)	73	138 (+7)	8
(생 략)						(생 략)							
세무		29	29				세무		28 (△1)	28 (△1)			
(생 략)						(생 략)							
사회복지		44	10		34		사회복지		51 (+7)	10		41 (+7)	
(생 략)						(생 략)							
운전		15	7	2	5	1	운전		19 (+4)	11 (+4)	2	5	1
(생 략)						(생 략)							
9급 소계		358	174	11	172	1	9급 소계		346 (△12)	174	11	160 (△12)	1
(생 략)						(생 략)							
행정		139	91	2	45	1	행정		140 (+1)	92 (+1)	2	45	1
(생 략)						(생 략)							
행정 또는 세무		38	38				행정 또는 세무		37 (△1)	37 (△1)			
(생 략)						(생 략)							
행정 또는 사회복지		126	6		120		행정 또는 사회복지		114 (△12)	6		108 (△12)	
(생 략)						(생 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1.1.1.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직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개정

- 6급 : 2명 증원(행정 또는 세무 1명 증원, 사회복지 1명 증원)
- 7급 : 인원수 변동 없음(세무 1명 증원, 사회복지 4명 증원, 운전 4명 감소, 시설관리 1명 감소)
- 8급 : 10명 증원(세무 1명 감소, 사회복지 7명 증원, 운전 4명 증원)
- 9급 : 12명 감소(행정 1명 증원, 행정 또는 세무 1명 감소, 행정 또는 사회복지 12명 감소)

규 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930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를 “제2조에 따른”으로, “관리”를 “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금을 대여기관에”를 “대여기관에 기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용도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4조제4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4조제3호”를 각각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원물자 생산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조제4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4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여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 -----제2조----- ----- ----- -----의 관리----- -----.
2. “대하”란 구청장이 기금을 대여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 대여기관에 기금을 -----.
3. “재단”이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한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단체를 말한다.	3. ----- 제4조제1항제2호의 용도----- ----- -----.
4. “대행기관”이란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밖의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 구청장으로부터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용도에 따른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기금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 -----.
1.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여기관에 위탁운영하며, 이 경우 기금을 대하고, 대하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1. --- 제4조제1항제1호----- ----- ----- ----- -----.
2.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대행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이하 “관리 운영비”라 한다)를 대행기관과 협의한 범위에서 지급한다.	2. ----- 제4조제1항제4호---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출연사업)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강남구 내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 신용보증재원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출연사업) ① ----- --- 제4조제1항제2호-----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제5조의2(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현행	개정안
① 구청장은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이하 “협력자금”이라 한다) 용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보전을 할 수 있다.	① ----- ----- ---- 제4조제1항제3호----- ----- ----- -----.
②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에게 용자한 협력자금 이자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4조제1항제3호-----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용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써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6조(용자대상 선정기준) ① ----- 제4조제1항제1호-----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자	2. ----- -- 중점관리대상업체-----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자금을 용자받으려는 자는	제7조(용자신청) ① --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용자조건) ① 제6조에 따른 기금 의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 로 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u>3년</u>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9조(용자조건) ① ----- ----- ----- <u>4년</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① 조 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비 출연 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는 이 규칙 제5조제3항의 출연금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12조(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① -- - 제4조제1항제2호-----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증조건) 재단의 신용보증은 업체당 <u>5천만원</u> 이내로 하고, 대출 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보증조건) ----- ----- <u>1억원</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창업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제16조(창업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창업지 원대상자는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① -- 제4조제1항제4호----- -----

현행	개정안
기술·경영능력이 있는 저소득 창업 희망자로 대행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하기로 결정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의 위탁) 조례 <u>제4조제4호</u> 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해 구청장은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 <u>제4조제1항</u> <u>제4호</u>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체당 신용보증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난과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융자지원 원금상환기간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제9조)

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한도를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상향(제14조)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